

『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자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년 10월 1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10월 1일

라. 상정일자 : 2008년 10월 9일

제1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허 경 선

나. 제안이유

-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선진시설을 견학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시 주변 영향지역주민의 인정 범위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지역 해당 여·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며,
- 환경상 영향 조사 후 영향권 내 거주 주민이 없을 경우의 주민 지원협의체 구성 요건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선진시설 견학에 대한 근거마련(안 제4조의1)
- 영향지역 주민의 인정범위 근거 마련(안 제5조의1)
 - 자격요건 : 입지결정고시 1년 전 주민등록 등재하고 거주한 자
- 영향지역에 거주 주민이 없을 경우 주민감시요원 위촉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해당 면 또는 인근지역 주민
-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 시의회의원 : 2인
 - 시의회 추천 읍·면·동별 주민대표 : 각 5인
 -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2인
 -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의회의원 : 4명(해당지역 의원 포함)
 - 시의회 추천 전문가 : 2명
 - 필요시 3명 이내의 인근지역 주민대표 추가
-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기금사용 방법 규정(안 제14조제5항)
 -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결정에 따라 기금사용

라. 참고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나 명 철

○ 본 개정 조례안은

-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할때에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인정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여,
-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영향지역 해당 여·부에 대한 민원 해소와, 환경상 영향 조사 후 영향권 내 거주 주민이 없을 경우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요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선진시설 견학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조의1)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로 민원해소 및 사업추진 운영의 원활을 도모코자 함
- 영향지역 주민의 인정범위 근거 마련(안 제5조의1)
자격요건 : 입지결정고시 1년전 주민등록 등재하고 거주한 자
- 영향지역에 거주 주민이 없을 경우 주민감시요원 위촉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금사용방법을 규정함(안 제14조제5항)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설치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인정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여 영향지역 주민의 해당 여·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 견학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주민의 거주 여·부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